

예 산 총 칙

202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944,994,008	58,349,820
일반회계	1,626,915,625	48,807,469
특별회계	318,078,383	9,542,351
공기업특별회계	298,605,524	8,958,16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711,063	1,401,33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9,636,790	1,789,10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2,257,671	5,767,730
기타특별회계	19,472,859	584,18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36,421	10,09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176,671	185,3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64,599	121,938
수질개선특별회계	7,416,540	222,49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478,628	44,359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032,07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